

[정 정 대 비 표]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편 드 명	(정정 전)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정정 후)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정 정 서 류	(간이)투자설명서
정 정 사 유	- 펀드명 변경 -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효 력 발 생 일	2026년 07월 22일

■ 정정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펀드명	펀드명 변경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 자 투자신탁(채권)
[요약정보]			
표지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의 60%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며, 시장이자율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신용등급 하락 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금리변동 및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의 80%이상을 국내채권에 <u>주로</u> 투자하는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에 <u>주로</u> 투자하며, 시장이자율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신용등급 하락 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금리변동 및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u>비교지수1)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u> - 이 투자신탁은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만기가 짧은 단기사채(ABSTB),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0.5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에 <u>주로</u>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u>비교지수1)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u> - <u>모투자신탁의 주요전략</u> :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만기가 짧은 단기사채(ABSTB),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0.5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1) : KIS Call * 100%	큰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 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1) : KIS Call * 100%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 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 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u>모자형</u>
운용전문인력	-	-	- 2026.06.30 기준으로 업데이트
주요투자위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 수익자의 총수 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 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 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 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u>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u> <u>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u> <u>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u> <u>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u> <u>용하는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u> <u>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u>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 수익자의 총수 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 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 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 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u><삭제></u>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펀드명	펀드명 변경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 <u>자</u> 투자신탁(채 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문구 삭제	1. ~ 10 (생략) 11.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 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 업자가 운용하는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 1호(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MMF와 다르게 투자대 상, 안정적 자산, 잔존만기, 유동성 비율 등 MMF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장부 가평가를 받는 MMF와 달리 시가평가를 받는 펀드이므로 편입 종목의 가격 변동	1. ~ 10 (현행과 동일) <u><삭제></u> 11. 이 투자신탁은 MMF와 다르게 투자대 상, 안정적 자산, 잔존만기, 유동성 비율 등 MMF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장부 가평가를 받는 MMF와 달리 시가평가를 받는 펀드이므로 편입 종목의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투자위험이 MMF보다 큰 상품입니다.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투자위험이 MMF보다 큰 상품입니다.
[요약정보]			
표지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의 60%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며, 시장이자율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신용등급 하락 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금리변동 및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의 80%이상을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이자율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신용등급 하락 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금리변동 및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1)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만기가 짧은 단기사채(ABSTB),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0.5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1) : KIS Call * 100%	-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1)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모투자신탁의 주요전략 :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만기가 짧은 단기사채(ABSTB),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0.5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1) : KIS Call * 100%
분류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운용전문인력	-	-	- 2026.06.30 기준으로 업데이트
주요투자위험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

		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u>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u>	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u><삭제></u>
--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명 변경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가. ~ 라. (생략) 마. 특수형태표시 : <u><신설></u>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생략)	가. ~ 라. (현행과 동일) 마. 특수형태표시 : <u>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u>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현행과 동일)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명 변경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2026.07.22: 펀드명 변경(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5.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 <u><신설></u>	- 2026.06.30 기준으로 업데이트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u> <u><붙임1></u>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u><신설></u> 나. (생략) 다.<u><신설></u>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u><붙임2></u> 나. (현행과 동일) 다. 모자형 구조 <u>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당해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u>

		<신설>	<붙임3>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1)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하 생략) <신설> =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붙임4>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가. 투자 대상 ① 채권 : 60% 이상 단, 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AA- 등급 미만인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여야 하며,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를 포함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② 어음 : 40% 이하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	가. 투자 대상 ① 수익증권(모수익증권) : 80% 이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80% 이상을 투자합니다. - 모투자신탁 명칭: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삭제> <삭제>

	<u>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u> ④ <u>파생상품 : 위험평가액의 10% 이하</u> <u>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u> <u>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u> <u>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u> <u>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채권관련장내</u> <u>파생상품"이라 한다)</u> ⑤ <u>집합투자증권 등 : 40% 이하</u> <u>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u> <u>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u> <u>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u> <u>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u> <u>(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u> ⑥ <u>환매조건부매도 : 50% 이하</u> <u>환매조건부매도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u> <u>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u> <u>말하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u> <u>50% 이하로 합니다.</u> ⑦ <u>증권의 대여 : 50% 이하</u> <u>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u> <u>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u> <u>이하로 합니다.</u> ⑧ <u>증권의 차입 : 20% 이하</u> <u>①~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u> <u>산총액의 20% 이하로 합니다.</u> ⑨ <u>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u> <u>부매수</u> <u>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u> <u>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u> <u>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u> <u>수 있습니다.</u>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 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 부매수 :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 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 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	---	--

	말한다)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위의 ①~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u>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u>으로 ①~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주2) <u>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u>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주3) <u>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u> <신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말한다) ③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위의 ①~②의 규정 및 <u>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u>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u>모투자신탁의 증권 등 가격변동</u>으로 ①~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u> <u><붙임5></u>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	---	---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생략) ②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고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현행과 동일) ② <u>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 <삭제> <삭제>
--	---	---

	<u>용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u> <u>③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u>④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u>⑤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u> <u>⑥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u> <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가. 투자대상 ④~⑧, 위의 나. 투자제한 ②~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u> <u>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u> <u>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위의 나. 투자제한 ②의 본문, ③ 내지 ④ 및 집합투자규약 제2조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의 “가.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붙임6>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 만기가 짧은 단기사채(ABSTB),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0.5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붙임7> (3) 위험관리 <붙임8> <신설> (4)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 - 환매 및 상환 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집합투자규약의 환매 연기 및 상환금 지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 만기가 짧은 단기사채(ABSTB),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0.5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삭제> (3) 위험관리 <삭제> 이 투자신탁의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급에 관한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채권시장이 급변하여 펀드 내 편입 자산에 대한 비상 위기대응이 필요할 경우, 당사 내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기 발생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운용담당부서는 물론, 필요시 전사 차원의 대응방안을 수립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잔존만기가 짧은 국내채권 및 기업어음, 그리고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매에 따른 유동성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또한, 당일 결제가 가능한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등을 위주로 편입하여 당일 매매를 통해 즉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운용하여 투자자의 환매 청구에 대하여 원활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 및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에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므로 해당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붙임9>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u><신설></u> 가. ~ 나. (생략) 다. 기타 투자위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u>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u> <u><신설></u>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u>또한, 아래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 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 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u> <u>※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모투자신탁에 관한 위험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u>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기타 투자위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u><삭제></u> 대량환매 위험 :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 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
--	--	---	---

		<u><신설></u>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저위험자산(단기채 및 어음)에 대부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0.3286%이며,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6등급(매우낮은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하 생략)	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입수한 범위 내에서 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본 펀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저위험자산(단기채 및 어음)에 대부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0.3286%이며,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6등급(매우낮은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가. 매입 (1) ~ (4) (생략) <u><신설></u> 나. 환매 (1) ~ (4) (생략) <u><신설></u>	가. 매입 (1) ~ (4) (현행과 동일)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 (4) (현행과 동일)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

		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u>(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u>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u>(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u>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u>(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u>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법 시행령 제256조)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u>(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u>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u>(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u>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u>(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u>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법 시행령 제256조)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	--	---	---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u>(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u>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u>(9)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u> <table><tr><td>중도환매 불가</td><td>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td><td>중도환매 허용</td></tr><tr><td>-</td><td>-</td><td>○</td></tr></table> 다. (생략)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u>(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u>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u>(10)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u> <table><tr><td>중도환매 불가</td><td>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td><td>중도환매 허용</td></tr><tr><td>-</td><td>-</td><td>○</td></tr></table> 다. (현행과 동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u><신설></u>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해지일이 속하는												

		(중략) - <u>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u>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생략)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중략) - <u>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u>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현행과 동일)
--	--	--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가. 수익자 총회 등 (1) (생략)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단, 집합투자규약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	가. 수익자 총회 등 (1) (현행과 동일)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단, 집합투자규약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

		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u><신설></u> ② ~ ③ (생략) (3) ~ (4) (생략) 나. ~ 바. (생략)	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 <u>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 ② ~ ③ (현행과 동일) (3) ~ (4) (현행과 동일) 나. ~ 바. (현행과 동일)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가. 정기보고서 (1) (생략)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 생략)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가. 정기보고서 (1) 현행과 동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생략) 나. 수시공시 (1) (생략) (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 ⑩ (생략) (3) ~ (4) (생략)	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현행과 동일) 나. 수시공시 (1) (현행과 동일) (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 ⑩ (현행과 동일) (3) ~ (4) (현행과 동일)
--	--	--	---

<붙임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원석	1975	책임 (수석매니저)	3개	39,402억	-	-	-3.81	0.96	21년 6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SH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3년 7개월) - 현대차증권 채권운용팀(1년 1개월) - 한화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1년 3개월) - 흥국증권 채권금융팀(3년 6개월) - 아이엠투자증권 채권금융팀(6개월) - 부국증권 FICC 본부(3년 2개월) - 한양증권 채권금융팀(5개월) - IBK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1년 5개월) - 대신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5년 8개월) - BNK자산운용 채권운용3팀장(2025.08~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0개, 0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 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③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혜진	1995	부책임 (매니저)	3개	39,402억	-	-	-3.81	0.96	1년 9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아람드리자산운용 운용지원팀 (1년 1개월) - 브이아이자산운용 운용지원팀 (1년 1개월)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트레이딩팀 (2년 8개월) - BNK자산운용 채권운용 (2024.10~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0개, 0억]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④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붙임2>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붙임3>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8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주요 투자대상	- 채권 80% 이상 (단, 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AA- 등급 미만인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 - 어음 40% 이하 등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비교지수 ^{주1)} : KIS Call * 100%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만기가 짧은 단기사채(ABSTB),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0.5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위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붙임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비교지수 ^{주1)}: KIS Call * 100%

주1) KIS Call 지수 : KIS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콜금리 수익률에 따른 지수로 콜금리의 일일 변화를 반영하는 지수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자산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붙임5>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1)}	투자대상 내역
①	채권	80% 이상 단, 취득시 신용평가 등 급이 AA- 등 급 미만인 채 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을 포함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인 것에 한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②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⑤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⑥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⑦	증권의 대여 주2)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⑧	증권의 차입 주3)	20% 이하	①~③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합니다.
⑨	단기대출, 금융 기관에의 예치, 환매 조건부매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위의 ①~③의 규정 및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 및 ①~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주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주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붙임6>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내용
①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고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③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⑥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가. 투자대상 ④~⑧, 위의 나. 투자제한 ②~④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위의 나. 투자제한 ②의 본문, ③ 내지 ④ 및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의 "가.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붙임7>

[주요 투자전략]

Stability(안정성)	· 잔존만기가 짧은 전단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중심으로 편입하여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추구 · Buy&Hold 전략에 의한 안정적인 이자 수익 추구
Profitability(수익성)	· 신용등급, 잔존만기 등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은 전단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발굴하여 수익 극대화 추구 · 다양한 알파전략을 통한 추가 수익 확대
Liquidity(유동성)	· 펀드자산의 일정비율만큼 유동성을 확보하여 펀드 환매 및 설정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관리 유지

[초과수익 전략]

Yield Curve Strategy	· 통화정책, 수급 등을 고려하여 Yield Curve 전략 수립 · 단기금리 Yield Curve에서 Rolling Effect가 가장 큰 구간을 찾아 선별적 매수
Relative Value Strategy	· 정부정책, 수급, Mis-Pricing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가격괴리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은 매수하고 고평가된 종목은 매도하여 수익추구 · 만기별 금리 구간에 따라 금리가 높은 구간 위주로 매수

<붙임8>

금리 리스크	·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며, 지속적인 Roll-Over를 통한 자체 금리 리스크 관리
신용 리스크	- 규정에 기반한 전사적인 크레딧 리스크 관리 · 신용등급 활용한 개별 종목별 전사 투자한도 부여 · 정기/수시 신용투자 유니버스 관리 - 정량적/정성적 개별기업 분석 ·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한 정량적 분석 · 지배구조 및 산업동향 등을 활용한 정성적 분석
유동성 리스크	· REPO 등 유동성 자산 비율을 확보하여 환매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 · 고유동성 자산에 일정 비율 투자하여 추가적인 유동성 리스크 대응

<붙임9>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만기가 짧은 단기사채(ABSTB),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며, 채권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0.5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Stability (안정성)	· 잔존만기가 짧은 전단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중심으로 편입하여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추구 · Buy&Hold 전략에 의한 안정적인 이자 수익 추구
Profitability (수익성)	· 신용등급, 잔존만기 등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은 전단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발굴하여 수익 극대화 추구 · 다양한 알파전략을 통한 추가 수익 확대
Liquidity (유동성)	· 펀드자산의 일정비율만큼 유동성을 확보하여 펀드 환매 및 설정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관리 유지

[초과수익 전략]

Yield Curve Strategy	· 통화정책, 수급 등을 고려하여 Yield Curve 전략 수립 · 단기금리 Yield Curve에서 Rolling Effect가 가장 큰 구간을 찾아 선별적 매수
Relative Value Strategy	· 정부정책, 수급, Mis-Pricing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가격괴리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은 매수하고 고평가된 종목은 매도하여 수익 추구 · 만기별 금리 구간에 따라 금리가 높은 구간 위주로 매수

[포트폴리오 예시 (2026.06.30 기준)]

투자대상	예시		
	섹터	신용등급	비중
채권	회사채	A- 이상	19%
	전자단기사채	A2- 이상	23%
	기업어음증권	A2- 이상	51%
REPO 매입 및 예금		-	7%

※ 상기의 투자비중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예시 기준일에서의 투자대상 자산의 비중을 반영한 예시이며,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 시장상황 및 운용전략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금리 리스크	·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며, 지속적인 Roll-Over를 통한 자체 금리 리스크 관리
신용 리스크	- 규정에 기반한 전사적인 크레딧 리스크 관리 · 신용등급 활용한 개별 종목별 전사 투자한도 부여 · 정기/수시 신용투자 유니버스 관리 - 정량적/정성적 개별기업 분석 ·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한 정량적 분석 · 지배구조 및 산업동향 등을 활용한 정성적 분석
유동성 리스크	· REPO 등 유동성 자산 비율을 확보하여 환매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 · 고유동성 자산에 일정 비율 투자하여 추가적인 유동성 리스크 대응

(3)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 환매 및 상환 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집합투자계약의 환매 연기 및 상환금 지급에 관한 관련 조

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채권시장이 급변하여 펀드 내 편입자산에 대한 비상 위기대응이 필요할 경우, 당사 내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기발생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운용담당부서는 물론, 필요시 전사 차원의 대응방안을 수립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잔존만기가 짧은 국내채권 및 기업어음, 그리고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매에 따른 유동성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또한, 당일 결제가 가능한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등을 위주로 편입하여 당일 매매를 통해 즉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운용하여 투자자의 환매 청구에 대하여 원활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1단계 (주의)	• 리스크관리팀 및 운용본부 상호 점검 및 통보 • 운용본부는 시장급변에 따른 위탁자산 영향을 점검 - 위기상황으로 판단시에는 2단계 절차를 진행
2단계 (경계)	• 관련 운용본부는 지체없이 아래 내용이 포함된 위기점검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 발생현황, 원인분석, 향후 전망, 관련부서 협조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
3단계 (위기)	•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한 전사적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 및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